

고 발 장

고 발 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피고발인 김석동 외 7

죄 명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귀 청 2011형제100715 사건과 관련 사건입니다.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 02-522-7284, 전송 : 02-522-7285)

대표자 : 회장 김선수

담당자 : 변호사 권영국 (연락처 : 3472-2711)

2. 참여연대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Tel. 02-723-5052, Fax. 02-6919-2004)

대표자 : 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

담당자 : 안진걸 팀장 (연락처 : 723-5303)

피고발인

성명	김 석 동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아타워 705호
직업	금융위원회 위원장

성명	추 경 호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전화번호 02-2156-8000)
직업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이상제, 이석준, 심인숙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전화번호 02-2156-8000)
직업	금융위원회 위원

성명	고승범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전화번호 02-2156-8000)
직업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성명	성대규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전화번호 02-2156-8000)
직업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성명	성기철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전화번호 02-2156-8000)
직업	금융위원회 은행과 서기관

1. 고발 취지

고발인(이하 "고발인"이라 합니다)들은 피고발인(이하 "피고발인"이라 합니다)들을 직무유기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 (1) 피고발인들은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 (2) 피고발인들은 ① 비금융주력자(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승인 업무를 행하고(동법 제15조의2 제1항), ② 비금융주력자가 주식의 최대보유한도를 초과하여¹⁾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제16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체 없이 그 한도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나(동법 제16조 제1항),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2009.06.09. 법률 978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제한한 반면, 2009.06.09. 법률 9784호로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은행법 제1항에서는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하여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5조의 2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 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는 업무를 행하고(동법 제16조 제2항), ③비금융주력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의2 제6항에 의한 자격과 승인의 요건(이하 ‘초과보유요건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혹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심사하여²⁾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이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초과보유요건 등에 대한 총족명령과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릴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동법 제16조의4 제1, 3, 4 항).

(3)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9. 4. 엘에스에프-케이아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이하 "LSF"라 합니다)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합니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 51.02%를 취득하고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할 당시, 구 은행법(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 4. 1. 시행된 은행법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동일함) 제1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LSF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충실향한 심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 LSF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51.02%의 외환은행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국회의원³⁾을 비롯한 여러 단체⁴⁾ 그리고 외환은행 직원들은 LSF가

2)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3)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수없이 제기하였고, 언론에서도 수차에 걸쳐 LSF의 정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2011. 6. 2.과 같은 해 9. 5. 금융위원회에 LSF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징벌적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 제2항,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의 4 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앞서본 바와 같이 2003. 9. 26. LSF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당시는 물론, 2011. 3. 16. 금융위원회는 2010. 6월말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라며 LSF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 12월말,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1. 6월말 기준의 반기별 정기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11. 6. 2.과 9. 5. 외환은행지부에서 금융위원회에 LSF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징벌적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4)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민변, 외환은행지부 등

5) 이들 각각에 대해 정기적격성 심사, 수시적격성 심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 직무유기

(가) 미국에 근거를 둔 다국적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는 Lone Star Partners IV, L.P.와 Lone Star Fund IV(U.S.), L.P.(이하 총칭하여 "론스타펀드 4호"라 합니다)를 설립하여 2003. 8. 2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329,042,672주(51.02%)를 양수 혹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3. 8. 21. 엘에스에프-케이아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이하 "LSF"라 합니다)를 설립한 후, 2003. 9. 5. LSF가 론스타펀드 4호의 위 인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LSF는 2003. 10. 31. 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외환은행의 51.02% 주식을 취득하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절대적인 지배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 론스타펀드 및 LSF는 2003. 10. 31.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요 투자자들과 피투자회사의 면면 등 실체가 잘 드러나 있지 아니한 사모펀드로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상회하므로 은행법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론스타펀드의 동일인인 LSF는 비금융주력자로서 구 은행법 제16조의 2 제1항(현행 은행법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⁶⁾ 만약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에 의해 일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은행법 개정으로 현행법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제16조의2 제1항).

금산분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은행법 취지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일정한 적격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하 10% 초과 취득승인을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이라 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는 LSF가 2003. 9. 4.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당시 LSF의 동일인으로서 Lone Star Partners IV, L.P와 Lone Star Fund IV(U.S), L.P 등 23개 법인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동일인 회사 일부를 누락하고 스스로 동일인 회사로 기재한 위 23개 법인들의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채 비금융회사를 금융회사인 것처럼 기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직무유기), 나아가 직권을 남용하여 2003. 9. 26. 비금융주력자인 LSF에게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게만 가능한 51.02%의 외환은행주식 취득을 승인하였습니다(직권남용).

(註) 설령 10%가 이하로 해도 이스하 다시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

항의 처분명령 대상인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라 합니다)를 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LS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밝혀진 경우에는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SF는 은행법 제16조 제1항⁷⁾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식(구 은행법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2003. 9. 4. LSF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 당시는 물론 2011. 3. 16. 금융위원회에서 (2010. 6. 말 기준으로) LSF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발표한 이후, 반기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적격성 심사 내지 수시적격성 심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1. 3. 16. 금융위원회가 (2010. 6. 말 기준으로) LSF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발표한 이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에서 2011. 6. 2.과 9. 5. 두 차례에 걸쳐 금융위원회에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증명하는 자료⁸⁾와 함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강제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1. 11. 18. 금융위원회는 LSF의 외환카드 추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에

7) 이 건에서는 LSF가 최소한 2005년 말부터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하므로 구 은행법 제16조 제1항 적용.

8) 일본동경증권거래소(東京証券取引所) 웹사이트,
<http://www.tse.or.jp/tseHpFront/StockSearch.do>를 통해 이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한 단순처분명령을 할 때까지도,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끝내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LSF 관련 자료에 의하면, LSF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통해, 일본에서 적어도 2005년부터⁹⁾ 자산 규모 1.8조원 이상의 골프장(골프장 법인명 : PGM Holdings KK)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이 당시부터 국내의 비금융회사를 포함하면 론스타의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2조원이 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이에 관한 자료는 일본 동경증권거래소(<http://www.tse.or.jp/tseHpFront/StockSearch.do>)를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2011. 9. 말 기준으로 위 일본골프장 법인의 자산은 4조 4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 소 결

피고발인들은 LSF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LSF의 외환은행주식 취득 당시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방기하였고, 2011. 6. 2.과 9. 5.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증명할 자료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같은 해 11. 18. LSF의 외환카드 추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한 단순처분명령을 내릴 때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LSF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9) 론스타는 2003. 3월경부터 PGM Holdings KK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5년경부터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그 이전의 자산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전의 PGM Holdings KK 자산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및 판단, 그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식(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발인들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정기 및 수시적격성 심사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식(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이행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유기한 결과입니다.

(2) 직권남용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을 정한 은행법 제16조의 4 규정은 ‘적법하게 승인을 얻어’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취득한 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들에 대하여 그 취득 이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반면 비금융주력자임에도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¹⁰⁾ 취득하는 등 한도초과보유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그 취득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거나 취득 후 비금융주력자로 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6조의 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¹¹⁾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법률 규정 자체로 동일인의 한도초과주식

10) 2009.06.09 법률 9784호로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9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법 제16조의 2 제1항)로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개정 후에도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법 제15조의 2 제1항).

11) 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방 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

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체 없이 그 한도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 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하는 조치
-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은행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⑧ 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체 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

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제1항),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 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LSF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은행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로 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유주식 모두 강제처분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한도초과보유주주에게 적용되는 은행법 제16조의 4 제3, 4, 5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 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 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④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 비율의 주식에 대한 보유는 이경우로 제한하는 수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이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함에도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에 따른 처분명령(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식(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린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은행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3. 고발이유

가. LSF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1) 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25% 이상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그 동일인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나목).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따라 LSF의 동일인의 범주에 속하는 론스타펀드는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운용, 구조조정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므로,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LSF의 동일인으로서 론스타펀드 4호만이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만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론스타펀드 전체가 아닌 론스타펀드 4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2) 론스타펀드를 기준으로 할 때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가) 론스타펀드는 폐쇄형 사모펀드로서,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운용, 구조조정 등에 투자하는 국제투기자본회사입니다. 론스타펀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 론스타펀드에는 금융위원회의 심사대상이었던 론스타펀드 4호 뿐만 아니라 Lone Star Fund II, III, V,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총 6개의 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LSF는 론스타펀드가 국내 자본을 손쉽게 국외로 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벨기에에 적을 두고 세운 형식상의 법인으로서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 LSF는 LSF에 직접 투자한 위 론스타펀드 4호 및 그 이하 계열사들만을 LSF의 동일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¹²⁾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제8호¹³⁾에 따를 경우, 론스타펀드 4호 뿐만 아니라 론스타펀드 및 그에 속하는 6개의 펀드 모두가 LSF의 동일인에 해

12)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3)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당하므로 위 분류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04. 5. 28.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사 (Temasek Holdings (Private) Ltd.)가 하나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9.99%를 취득·보유하고자 할 때, 테마섹 홀딩스사의 자체 업종이 아닌 전 세계 투자 자산을 기준으로 삼아 위 테마섹 홀딩스사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4%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나은행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 주식의 취득·보유를 승인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론스타펀드 전체가 LSF의 동일인에 해당함은 자명합니다(증 제1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다) 결국 론스타펀드는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투기회사로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LSF 또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3) 론스타펀드 4호를 기준으로 할 때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가) 론스타펀드(또는 LSF)가 2003. 9. 4.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한 LSF의 동일인으로서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증 제2호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신청서).

(단위: 백만 원)

회사명	업종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자산총액	자본총액
Lone Star Partners IV,L.P	기타투자기관	X	39,701	37,567
Lone Star Fund IV(U.S),L.P	기타투자기관	X	1,695,178	723,143

Lone Star Fund IV(Bermuda),L.P	기타투자기관	X	1,091,259	468,412
KEB Investors, L.P	기타투자기관	X	14	14
LSF4 Global Management Ltd.	기타투자기관	X	14	14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기타투자기관	X	227,508	202,563
KEB Holding, L.P	기타투자기관	X	14	14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	기타투자기관	X	106,509	83,216
LSF-KEB Capital Investment Sarl	기타투자기관	X	161	161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기타투자기관	X	111	61
LSF-KEB Holding's SCA	기타투자기관	X	80	80
엘에스에프포서울 원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73,801	15,049
엘에스에프포서울 투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16,504	3,232
엘에스에프포서울 쓰리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191,452	16,791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그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308,711	27,076
해과유동화전문회사	그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33,324	28,439
아폴로유동화전문회사	그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0,099	1,416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	그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78,370	11,004
극동건설 주식회사	도로건설업	O	706,479	407,837
스타리스 주식회사	금융리스업	X	384,746	57,998
극동요업 주식회사	타일등요업	O	41,108	35,721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비주거부동산관리업	O	13,233	5,661
신한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정보업	O	5,358	3,459
계	총계		5,223,735	2,128,839
	비금융회사소계 (총계에 대한비율)		766,178 (14.67%)	452,678 (21.26%)

위와 같이 LSF는 2003. 9.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서 LSF의 동일인 중 극동건설 주식회사, 극동요업 주식회사,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만이 비금융회사라고 하면서, 위 각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452,678백만 원으로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 2조 1,288억 원의 21.26%에 해당하고,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 역시 7,661억 원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증 제2호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신청서 참조).

이에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위 자료 만을 기준으로 삼아 LSF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 그러나 위 동일인 중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은 2003년부터 2010.12.31.까지 벨기에 회사법 5조 및 6조에 따라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다시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는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PGM Holdings KK의 주식 760,000주 (지분율 64.55%)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증 제3호 벨기에 법무법인 의견서, 증 제4호의1 일본 회계법인 의견서, 증 제4호의 2 일본 회계법인 의견서 번역본).

PGM Holdings KK는 일본 내에서 여러 자회사를 통하여 골프장, 공동묘지, 호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는바, 아래와 같이 2005년부터¹⁴⁾ 2010년까지의 PGM Holdings KK의 자산변동사항을 고려해 볼 때, LSF는 적어도 2005년부터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¹⁵⁾의

14) PGM Holdings KK가 일본 내 골프장 등을 보유한 것은 2003년부터이나 2005년에 상장된 관계로 자산현황이 공개된 시점이 2005년부터이므로, 수사과정에서 그 이전의 자산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증 제4호의 3 일본 회계법인 추가 의견서, 증 제4호의 4 일본 회계법인 추가의견서 번역본).

(단위: 억원)

년도 (연말 기준)	PGM Holdings 자산	LSF 동일인 중 국내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회사(극동건설 ¹⁶), 극동 요업, 과천산업개발 ¹⁷)의 자산을 추가하는 경우 합계액
2010	37,038	37,038
2009	34,910	34,910
2008	37,650	37,650
2007	20,790	20,790
2006	17,474	17,474 + 7,608 = 25,082
2005	18,414	18,414 + 7,608 = 26,022

* 론스타 자신이 인정한 2005년 이후의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의 자산총액은 760,820백만 원입니다.

특히 동경증권거래소(<http://www.tse.or.jp/tseHpFront/StockSearch.do>)를 통해 일본골프장 법인(PGM Holdings KK)의 자산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2011. 9.말 기준으로 4조 409원에 이르므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증 제4호의 3 일본 회계법인 추가 의견서, 증 제4호의 4 일본 회계법인 추가의견서 번역본).

15)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16)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은 2007. 6. 웅진홀딩스에 매각되었음, 따라서 2006. 12.까지 LSF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에 포함됨, 아울러 2007년부터 PGM Holdings KK만으로도 2조원이 넘으므로 LSF가 비금융주력자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17) LSF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회사는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이외에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는 4개사라고 밝혔으나,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04. 5.21. (주)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였음.

결국 위와 같이 밝혀진 PGM Holdings KK의 일본 내 골프장 관련 자산 및 자본금 등을 감안할 때 LSF는 2003. 10. 31.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부터 이미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될 개연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4) 소 결

제1항), 초과분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¹⁸⁾.

(2)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2007. 3. 27. 금융감독위원회에게 LSF의 외환은행 보유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는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증 제5호의1 질의서, 증 제5호의2 금융감독위원회 회신). 따라서 위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인 구 은행법 제15조 제3항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금융주력자인 LSF는 위 예외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은행 발행주식총수의 4%(의결권 없는 주식

-
- 18) 구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전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6% 추가 보유 가능)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3) 결국 비금융주력자인 LSF는 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4) 설령 LSF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4 제1항에 따라 반기별 혹은 수시로 LSF가 은행법 제15조의 2 제6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은행법 제16조에 따른 비금융주력자 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LSF에 대한 위 반기별 정기정격성심사 내지 수시적격성 심사 결과, LSF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불이행

-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금융주력자인 LSF는 구 은행법에 의해 외환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4%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또는 LSF)는 2003. 9. 4. 금융감독위원회에 LSF의 동일인으로서 Lone Star Partners IV, L.P와 Lone Star Fund IV

(U.S), L.P 등 23개 법인만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동일인 회사 일부를 누락하고, 위 23개 법인들에 대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비금융회사를 금융회사인 것처럼 기망한 상태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을 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9. 26. LS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내렸으며, 이에 LSF는 2003. 10. 31.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취득한 것입니다.

(3) 결국 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LSF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후술하는 이유에서 고의적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누락한 채 LSF를 한도초과보유주주로 승인한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011. 11. 24.로 예정되어 있는바, 이 판결을 통해 2003년 LSF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신청 관련 서류 일체가 공개된다면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라. 2011. 3. 16.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당시 및 심사이후 피고발인들의 범행

(1) 2011. 3. 16.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가)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관련 반기 심사를 위해 LSF

는 KPMG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10. 6. 30. 기준 LSF의 동일인 범위와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2010. 9. 9.자 보고서(증 제6호, 이하 "KPMG 보고서 "라 합니다)를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KPMG 보고서에 의하면 ① LSF의 동일인으로는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23개 회사가 있고 ② 론스타펀드와 특수관계에 있는 어떠한 비공개 국내 또는 해외 회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LSF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미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1항 제8호에 따를 경우, 론스타펀드 4호 뿐만 아니라 론스타펀드 및 그에 속하는 6개의 펀드 모두가 LSF의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에도 다시 한 번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한 「론스타펀드」를 동일인 범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론스타펀드 4호 및 그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23개 회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LSF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합니다. 즉, 위 동일인 중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은 2003년부터 2010.12.31.까지 벨기에 회사법 5조 및 6조에 따라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다시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는 일본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PGM Holdings KK의 주식 760,000주(지분율 64.55%)를 보유한 모회사인바, 그 자산이 2005년과 2006년에는 국내 비금융회사와 합하여, 2007년부터는 독자적으로 2조원이 초과되므로 비금융주

력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LSF는 적어도 2005년부터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나목¹⁹⁾의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이 명백합니다(증 제4호의 1 내지 4 각 일본 회계법 인 의견서 및 번역본).

(다) 나아가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은 LSF가 제출한 특수관계인 현황 자료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LSF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특수관계인 현황과 해외 기관 자료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론스타펀드 4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비중이 25.17%(5,359억 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증 제7호 프레시안 기사).

LSF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펀드 4호의 특수관계인 23곳 중 금융회사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의 자산총액이 약 1,065억 원, 자본총액은 약 832억 원입니다. 그러나 임영호 국회의원실은 아래와 같이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이 자산의 51%, 자본의 75%가 산업자본으로 구성된 비금융회사임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LSF이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계 비중은 25%를 넘게 되어 LSF는 비금융 주력자가 됩니다.

1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동일인

[증 제7호 프레시안 기사]

론스타가 제출한 동일인 현황(2003. 9. 2.)				
회사명	업종	(단위:백만원)		
		비금융주력사 해당여부	자산총액	자본총계
Lone Star Partners IV L.P.	기타투자기관	X	39,701	37,567
Lone Star Fund IV (U.S.)L.P.	기타투자기관	X	1,695,178	723,143
Lone Star Fund IV (Bermuda)L.P.	기타투자기관	X	1,091,259	468,412
KEB Investors L.P.	기타투자기관	X	14	14
LSF4 Global Holding's Ltd	기타투자기관	X	14	14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기타투자기관	X	227,508	202,563
KEB Holding L.P.	기타투자기관	X	14	14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	기타투자기관	X	106,509	83,216
LSF-KEB Capital Investment S ar L	기타투자기관	X	161	161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기타투자기관	X	111	61
LSF-KEB Holding's SCA	기타투자기관	X	80	80
엘에스에프모서울 유동화전문화회사	기타투자기관	X	73,801	15,049
엘에스에프모서울 유동화전문화회사	기타투자기관	X	16,504	3,232
엘에스에프모서울 쓰리 유동화전문화 회사	기타투자기관	X	191,452	16,791
제우스유동화전문화 회사	그외기타금융 관련서비스업	X	308,711	27,076
해리유동화전문화 회사	그외기타금융 관련서비스업	X	133,324	28,439
아풀도유동화전문화 회사	그외기타금융 관련서비스업	X	10,099	1,416
아레스유동화전문화 회사	그외기타금융 관련서비스업	X	178,370	11,004
국동건설주식회사	도로건설업	O	706,479	407,837
스티리스주식회사	금융리스업	X	384,746	57,998
국동요업주식회사	타일등요업	O	41,108	35,721
과천산업개발주식 회사	비거주자부동 산관련업	O	13,233	5,661
신한신용정보	제권주식신용 정보업	O	5,358	3,459
	총 계		5,223,734	2,128,928
	비금융회사소계 (총계에 대한 비율)		766,178	452,678
			14.67%	21.26%
			5,371,344	2,128,916
			1,020,309	535,894
			19.00%	25.17%

▲론스타가 2003년 9월 금융위에 제출한 동일인 현황(원쪽과 달리, 임 의원실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내부 지배관계까지 파악한 결과 론스타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S ar L은 산업자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IV는 산업자본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어, 산업자본이라는 게 임 의원실의 평가다. ⓒ프레시안

(라) 결국 2011. 3. 16.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당시, 광고발언들은 LSF가 i) 론스타펀드 전체를 LSF의 동일인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23개 회사만을 동일인으로 삼았고, 또한 ii) 일본법인 PGM Holdings KK과 같은 론스타펀드 4호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인 회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비금융회사인 특수관계인 회사들을 감추었으며 iii) 일부 비금융회사를 금융회사를 둔갑시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이들 자료의 허위여부 내지 누락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속 공

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2) 2011. 3. 16.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이후의 직무유기

설령 2011. 3. 16. (2010. 12월말 기준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당시에는 LSF의 허위자료 제출로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11. 6. 2.과 9. 5.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같은 해 11. 18. 추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강제처분명령을 내린 시점까지도 LS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유보한 것은 명백하게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의무 내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실시해야 하는 수시 적격성 심사의무를 명백히 유기하는 것입니다(증 제8호증의 1 내지 2).

피고발인 및 금융위원회가 LSF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LSF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은 행위를 덮어버리고 하루 빨리 LSF가 외환은행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서둘러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피고발인들에게 촉구하였으나, 피고발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증 제9호 내일신문 기사]

내일신문]홍준표·손학규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 허용안돼" (2011.11.09) | 준표뉴스
2011/11/09 15:15
<http://blog.naver.com/jphong1014/30123182624> [복사]

정치권, 금융위에 '정별적 매각명령' 요구
법학계 "론스타 지분 장내 공개매각해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여야 대표 등 정치권 전반에서 거세지고 있다. 법학계와 시민사회도 "의결권과 지배권이 박탈된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의 '조건없는' 론스타 강제매각 결정에 급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강제매각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외환은행 지분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대표는 8일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청와대와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3일 외환은행 노조 주최 행사에 참석해 "현재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 계약은 무효"라며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정별적인 강제매각명령'을 거부할 경우 정문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최근 론스타는 유피관련을 받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론스타에 대한 정별적 강제매각명령은 민주당의 당론이다. 민주당은 7일 민노당 등 야 4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시민사회단체, 금융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지금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금융당국 책임자들은 형사처벌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연세대 법학대학 홍복기 교수와 같은 대학 섬영 교수가 이날 외환은행의 론스타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배제된 '정별적 매각명령'을 촉구한 법률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 제10호 매일경제 신문 기사]

금융위가 매각시한만 정해주면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론스타는 이미 일부 지분 매각과 고액 배당으로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했다. 하나금융과의 계약에 따라 남은 지분을 4조4000억원에 팔면 이는 고스란히 투자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걸려도 넘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금융위는 치밀하게 법리 검토를 거쳐 법을 어긴 론스타가 충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매각 시한과 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김 위원장이 이야기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라고 본다. 론스타로서는 국제소송을 걸겠다고 윤장을 놓으며 강력히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겉나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자본이 아전한 머리를 때려서 드다면 이는 오다치 악을 이룬다.

특히 LSF는 2011. 11. 28. 까지 일본 골프장 법인(PGM Holdings KK)를 일본 기업인 헤이와에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는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임을 시인하면서 이를 회피하려는 것임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여러 국회 의원들이 2011. 11. 17.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피고발인 김석동은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증 제11호 조선일보 기사).

[증 제11호 조선일보 기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실에 따르면 론스타는 일본 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을 일본 빼친코업체인 헤이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법인을 내달 5일까지 매각 완료할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론스타가 이 골프장을 매각할 경우에는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3) 2011. 11. 18. LSF에 대한 단순매각명령

금융위원회는 2011. 11. 18.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잃은 LSF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한도초과보유지분 41.02%에 대한 매각명령만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LSF는 하나금융지주와 이미 체결한 지분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외환은행을 인수한 때로부터 8년 동안 무려 5조 원의 차익을 거두고 대한민국에서 철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SF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은행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로 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유주식 모두 강제처분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한도초과보유주주에게 적용되는 은행법 제16조의 4 제3, 4, 5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LSF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와 판단을 할 법령상의 의무를 외면하고(직무유기), LSF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함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비금융주력자에게 적용할 은행법 제16조를 적용하는 대신 비금융주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림으로써 LSF의 ‘먹튀’를 적극적으로 돋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직권남용).

4. 결 론

LSF는 2003. 10. 31. 외환은행을 인수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해 오면서 막대한 배당을 이미 챙겼습니다. 이에 더하여 LSF는 2010. 11. 25. 하나금융지주에게 외환은행의 주식 51.02%를 총 금 4,968,544,347,200원(주당 금15,1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외환은행 주식의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위 매매계약이 종결될 경우 LSF를 비

롯한 론스타펀드측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LSF는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여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함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발인들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들로서 LSF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와 판단을 내리고, LSF에게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려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2005년부터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진다면 LSF는 그 때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의 경영해온 것으로 드러날 것이고,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고 은행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LSF는 외환은행 인수 직수외환은행과 그 자회사인 외환신용카드간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신용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아 최근 확정된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 806). 결국 LSF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속이고(또는 한국외환은행 인수 직후 비금융주력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유지한 상황에서 그 자회사의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비금융주력자임을 조속히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식분에 대한 의결권이 최소한 2005년부터 정지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국내 금융기관과 체결하게 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의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비금융주력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여 10%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린 행위는 명백하게 LSF의 소위 "먹튀"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한국 금융감독당국이 2003년 LSF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은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한바 있습니다. LSF가 명백한 비금융주력자임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과오를 시인할 수 없어 LSF가 비금융 주력자임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더 이상 피고발인들의 막대한 국부 유출 및 대한민국 정부 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좌시할 수 없어 본 건 고발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1. 11. 21.

고발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순번	증 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2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신청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3	벨기에 법무법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4-1	일본 회계법인 의견서 및 첨부 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4-2	일본 회계법인 의견서 번역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4-3	일본 회계법인 추가 의견서 및 첨부 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4-4	일본 회계법인 추가 의견서 번역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5-1	금융감독위원회 질의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5-2	금융감독위원회 회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6	KPMG삼정회계법인 보고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7	프레시안 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8-1	금융위원회 진정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8-2	금융위원회 회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9	내일신문 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10	매일경제 신문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11	조선일보 신문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